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0. 15 선고 2023나3601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0. 15 선고 2023나36010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14 선고 2022가단11900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일

담당변호사 서성원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현

담당변호사 주형훈

변론종결 2024. 8. 20.

판결선고 2024. 10. 15.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14. 선고 2022가단11900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20. 4. 28.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20. 5. 6. 접수 제7716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주장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하1행의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을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하1행 및 제3쪽 제1행의 각 ”이 법원의“를 각 ”제1심법원의“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5행의 ”갑 제5 내지 10호증“을 ”갑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5행의 ”을 제1호증“을 ”을 제1호증의 기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5행의 ”피고는“을 ”피고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6행의 ”소유하고 있던“ 다음에 ”서울“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민소영, 판사 전승환, 판사 김경애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H, I, J에 있는

K아파트 L동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M

철근콘크리트벽식조

박공지붕 16층 아파트

1층 485.20㎡

2층 482.44㎡

3층 482.44㎡

4층 482.44㎡

5층 482.44㎡

6층 482.44㎡

7층 482.44㎡

8층 482.44㎡

9층 482.44㎡

10층 482.44㎡

11층 482.44㎡

12층 482.44㎡

13층 482.44㎡

14층 482.44㎡

15층 482.44㎡

16층 482.4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서울특별시 광진구 H 대 8106㎡
2. 서울특별시 광진구 I 대 33㎡
3. 서울특별시 광진구 J 대 2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1. 제14층 N호 철근콘크리트벽식조 59.94㎡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8106분의 25.2535
2. 소유권대지권 33분의 0.1045
3. 소유권대지권 29분의 0.092

끝.

